|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 **장애인 취업 증치세 우대정책 촉진**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3년 제73호장애인 취업 증치세 우대정책 촉진 유관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장애인 취업 세수우대정책 촉진에 관한 통지》(재세[2007]92호, 이하 ‘통지’) 제5조 제1항 ‘법에 의거하여 고용한 장애인과 1년 이상(1년을 포함함)의 노동계약 또는 서비스협의를 체결한다’ 중의 ‘노동계약 또는 서비스협의’는 전일제 급여 지급형식 및 비(非)전일제 급여 지급형식의 노동계약 또는 서비스협의를 포함한다.장애인고용단위에서 비(非)전일제로 고용한 장애인과 법률법규 규정에 부합되는 노동계약 또는 서비스협의를 체결하였고, 해당 장애인이 단위의 실제적인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 ‘통지’의 규정에 따라 증치세 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본 공고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집행한다. 이전 처리와 본 공고규정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본 공고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2013년 12월 13일 |  | **国家税务总局****关于促进残疾人就业增值税优惠政策****有关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3年第73号　　现就促进残疾人就业增值税优惠政策有关问题公告如下：《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促进残疾人就业税收优惠政策的通知》（财税〔2007〕92号，以下简称“通知”）第五条第一项“依法与安置的每位残疾人签订了一年以上（含一年）的劳动合同或服务协议”中的“劳动合同或服务协议”，包括全日制工资发放形式和非全日制工资发放形式劳动合同或服务协议。　　安置残疾人单位聘用非全日制用工的残疾人，与其签订符合法律法规规定的劳动合同或服务协议，并且安置该残疾人在单位实际上岗工作的，可按照“通知”的规定，享受增值税优惠政策。本公告自2013年10月1日起执行。此前处理与本公告规定不一致的，按本公告规定执行。　　特此公告。国家税务总局2013年12月13日 |